
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, 산림기술의 연구·개발과 관련된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(안 제3조제4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최 기 도)